

기억의 기록학적 의미와 실천*

Meaning of Memory in Archival Activism

설문원(Seol, Moon-won)**

1. 머리말
2. 기억의 기록학적 의미와 실천 지향성
 - 1) 집단기억의 의미
 - 2) 기억담론의 흐름과 실천적 성격
3. 기억담론에서의 기록 실천 범주
 - 1) 모형 설계의 배경
 - 2) 기억기관 : 사회적 기억의 형성자 역할
 - 3) 기억투쟁 :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활동
 - 4) 회복적 기억 : 트라우마 기억 치유를 위한 기록활동
 - 5) 기억과정 : 공동체 정체성 기반의 기록활동
4. 맺음말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eol@pusan.ac.kr).

■ 투고일: 2020년 12월 31일 ■ 최초심사일: 2021년 01월 20일 ■ 최종 확정일: 2021년 01월 22일

■ 기록학연구 67, 267-318,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1.67.267>

〈초록〉

이 연구는 기록학에서의 기억 접근법을 기록전문직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내외 기록학계의 기억 연구들을 토대로 실천 영역별로 나누고 이를 모형화하였다. 기억 연구들이 제시하는 실천 영역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첫째, 기억기관(사회적 기억의 형성자 역할), 둘째, 기억투쟁(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활동), 셋째, 회복적 기억(사회적 참사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기억 치유를 기록활동), 넷째, 기억과정(공동체 정체성을 추구하는 기록활동)이다. 또한 각 범주 별로 의미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실천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기록전문성의 개입을 통한 실천과 정치사회적 실천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주제어 : 보존기록, 기억, 집단기억, 기록실천주의, 기억투쟁, 트라우마 기억, 기억과정, 공동체 아카이브, 정체성, 기록물관리기관, 기억기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memory approach” has affected archival methodology and activities, and suggest the directions of archival activities in each field.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memories and collective memories in Archival Studi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m more practically from the viewpoint of archival activism. In this study, the memory approaches in archival discourse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in terms of archival activism; i) the role of archives as social memory organizations, ii) the memory struggle for finding out the truth of the past, iii) archival activities of restorative justice for people who suffer from trauma memories after social disaster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v) the memory process of communities’ archiving for strengthening community identities. The meaning and issues are analyzed for each category, and

the practice based on archival expertise and political and social practices are examined together as necessary competencies for archival activism,

Keywords : archives, memory, collective memory, archival activism, memory struggle, trauma memory, memory process, community archives, identity, archival institutions, memory institutions

1. 머리말

기록학은 실천의 학문이다. 많은 이론과 담론들은 기록관리 현실과 결합되어 구체적인 실천에 반영된다. 최근 이러한 실천의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억 담론이 활발해지면서 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기록관리 방법론이나 정책을 벗어나 사회정의와 평등, 사회통합과 포용을 위한 실천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서구 전통에서 아키비스트의 핵심 역할은 개인이나 조직의 경제적,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도덕적 방어’라는 이름 아래 증거 가치의 수호가 매우 중요했다. 프랑스 혁명기에 선별 보존의 대상이 되었던 기록은 대부분 권리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재산상의 권익 보호나 신분 보장을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했고, 그러한 기록을 무결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키비스트였다. 그러나 권리가 인권, 평등, 정체성 등 다양한 권리로 확장되면서(Procter 2017), 기억 관점의 기록관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기록학계에서도 최근 기억 접근법에 토대를 둔 의미 있는 논문들이 다양한 주제로 생산되고 있다. 기록과 기억의 관계 및 개념 정립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지만 대체로 능동적인 실천가로서 기록전문직의 역할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실천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들이

기록문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적 고민을 안겨준다.

기억담론에도 실천에 있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다른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담론들이 제시하는 실천의 양상이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될 수도 있다. 사회적 재난을 기억하기 위한 아카이브의 경우 재난의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재난의 책임을 둘러싼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아카이브 실천의 방향은 사뭇 달라질 것이다. 한편 트라우마 기억을 중심으로 하는 담론에서 요구하는 실천은 기존의 기록전문직의 역할과는 다를 수 있다. 실천 방식에 따라 기록전문가의 전문성이 개입할 수 있는 정도도 다를 것이다. 이현정(2017)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 공동체와 어떻게 협력하고 아카이빙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모색에서 실천 현장의 기록활동가(activist archivist)가 전문직 역할에 대한 상실을 경험하면서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기록전문가의 역할에 있어서 기억 담론에서의 접근법이 증거 중심의 전통적인 접근법과는 다르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자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기억접근법을 표방하는 경우라도 실천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개입 정도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록학에서의 기억 접근법을 기록전문직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외 기록학계의 기억 연구들을 실천의 측면에서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메타연구에 해당한다. 기억 연구들이 제시하는 실천 영역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첫째, 기억기관(사회적 기억의 형성자 역할), 둘째, 기억투쟁(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활동), 셋째, 회복적 기억(재난 및 인권침해 이후의 트라우마 기억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록활동), 넷째, 기억과정(공동체가 공동체 정체성을 기반으로 추구하는 기록활동)이다. 범주화의 근거는 3장 1절에서 설명하였다. 각 범주는 개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중첩적이지만 활동의 주체나 전개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2. 기억의 기록학적 의미와 실천 지향성

1) 집단기억의 의미

(1) 기억의 사회화 과정

기록학에서의 기억담론을 다루기에 앞서 기억의 사회화 과정, 집단기억, 사회적 기억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듯이 개인의 기억도 그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한 사람의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자신의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얽혀 있기도 하다(Ketelaar 2014). 개인 기억의 첫 번째 사회적 틀은 가족에 의해 형성된다. 개인의 기억(경험한 것에 대한 기억)은 다른 사람의 기억으로부터, 더 나아가 사회적 기억이나 역사적 기억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족은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가족만이 공유하는 기억과 비밀을 가지고 있다. 가족 구성원들의 기억을 통해 개인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과거와 연결된다. 이 연결성은 기억의 사회화를 말해주는 기초가 된다(Ketelaar 2014).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너 살 경에 가족들과 소풍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기억을 갖고 있다. 그 기억은 자라면서 어머니 가족한테 자주 들었던 이야기로 윤색되거나 강화되었다. 그는 그 사건을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억하기에는 너무 어린 시절의 사건이고 자라면서 반복적으로 가족들이 그 일화를 이야기해 준 덕에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그가 기억하는 것(기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애가 타게 그를 찾아 헤맸던 어머니 가족들의 기억이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게 된 것인데 마치 자신이 기억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Millar 2006). 아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의 공유 과정은 개인의 기억이 집단의 기억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해준다.

과거 미아가 될 뻔한 사건은 그 후 가족들에게 생긴 다른 사건이나 상황에 비추어 재해석되고 이야기로 재구성되어 가족들이 공유하는 기억이 되었을 것이다. 사진, 일기, 편지 등과 같이 모든 남겨진 기록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상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기억을 강화하는 기념물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기억(자전적 기억)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기억 텍스트’와의 접촉을 통해 뒷받침되거나 보강되지 않으면 희미해지고 사라진다(Ketelaar 2014). 가족 간의 편지, 일기, 사진 등은 가족에 대한 어떤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하고 기억을 강화한다. 가족이나 집단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억과 기록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킬 뿐 아니라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부여한다.

(2) 집단기억 형성의 윤리

프랑스의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는 1926년 독일에서 발표한 그의 책(On Collective Memory)에서 모든 기억은 사회적 틀에 맞추어 형성되며, 집단기억은 “개인의 기억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틀”이라고 주장하였다(Halbwachs 1992: Ketelaar 2014에서 재인용). 개인의 기억과정이 사회적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집단기억’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다.

집단기억은 일종의 은유다. 기억은 개인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개인화된 활동이다.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이 기억을 하는 것이며 집단 자체는 기억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기억하는 것은 개인이지만 개인의 기억은 경험과 감정의 전달과 공유를 통해 ‘사회적’이 된다는 점에서 집단기억은 일종의 ‘사회적 과정’이다(Ketelaar 2014). 이런 점에서 개인의 기억이 표현되고 전달되고 공유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보존기록의 수집 자체를 집단기억의 형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보존기록에 포함된 경험이나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고 대중의 기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집단기억의 형성자로서 기록물관리기관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집단기억은 개인의 경험, 다른 사람과의 기억 공유와 무관하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수잔 손택은 집단기억을 기억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공동체 내의 합의된 ‘이야기’라고 보았다(전진성 2009, 22). 베트남전쟁에 대한 집단기억은 전쟁이나 반전 운동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다. 이들은 과거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어도 책이나 영화, 언론 기사 등을 보거나 읽음으로써 실제 자신이 겪은 것처럼 기억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철 기억(prosthetic memory)’이라고 부르기도 했다(Ketelaar 2014). 이런 점에서 볼 때 집단기억은 “공동체가 자신의 이미지(self image)를 만들어가는 문화적 행위”이다(Ketelaar 2014).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집단기억은 “역사가의 저서와 논문, 생존자의 증언, 박물관, 기념행사, 각종 매체와 문학·예술 작품, 역사 교과서 등에 의해 형성”된다(박찬승 역음 2017). 또한 구전을 통해, 의례나 의식, 공연 등을 통해, 기념물이나 건축, 심지어 풍경 자체를 통해서도 유지 전달된다. 집단기억을 공식적 내러티브로 조직한 대표적인 제도가 교과서이다(강선주 2009, 62). 이러한 ‘기억 텍스트’를 통해 집단기억은 발견되고 해석되지만 꾸며지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완전히 날조되기도 한다(Ketelaar 2014).

그 내용이 어떠한지 집단이 어떤 공통의 기억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은 아직 연구가 필요하다. 기억의 사회적 형성은 “공통으로 기억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달 행위”를 연구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Hedstrom 2010). 이 문제는 집단기억과 집단정체성의 관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박스는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은 핵심적인 사회 제도(가족, 종교, 사회계급)를 바탕으로 공유하고 있는 기억의 관습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제도는 의례, 풍습 등의 관습과 반복되는 구전 이야기에 의해서 집단기억이 형성되는 장소의 역할을 한다(Halbwachs 1992; Hedstrom 2010에서 재인

용). 알박스는 이렇게 사회적 정체성이 집단기억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으나 반대로 공동체가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억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Ketelaar 2014). 이들의 주장은 국가가 기념물이나 대규모 행사를 통해 집단적 함양을 도모하는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홉스봄(Eric Hobsbawm)¹⁾ 등은 과거라는 것이 사회적 화합, 설립, 합법화, 민족적 정체성의 가치관 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별적으로 포장되고 유포되는 것이라는, ‘만들어진 전통(The Inventions of Traditions)’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승되어 온 것이라고 이해되는 많은 전통이 실은 새롭게 창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전통의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공식행사, 식전, 제전 또는 스포츠 대회라는 모습으로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의례적인 상징 표현을 ‘만들어진 전통’으로 보았으며, 특히 변화와 혁신이 주장되는 19세기부터 20세기에 이러한 전통이 다수 발생한 점에 착안하여 어떻게 그러한 전통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 집단 귀속감, 권위의 정통성 유지, 가치체계의 침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0). 전체주의 국가들은 과거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주류 서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박물관, 기념관과 같은 문화기관 뿐만 아니라 신문, 교과서, 전기, 자서전, 지도, 인구조사, 영상, 공문서 등 다양한 유형의 자원을 활용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이 국가 주도의 전통 해석이나 집권층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주류 서사의 보급에 앞장서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기록원의 기록콘텐츠 주제가 5·18 민주화운동, 4·19혁명, 필화사건 등 한국 현대사 사건이었다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주제 선택의 흐름이 바뀌는 것도 같

1) Eric Hobsbawm(에릭 홉스봄)은 영국 케임브리지의 킹스칼리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으며, 1982년까지 런던대학교 버크백 칼리지에서 사회경제사 교수를 지냈다. 대표작은 역사에 관한 3부작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와 『노동하는 인간』, 『산업과 제국』, 『원초적 반란자들』, 『극단의 시대』, 『노동의 세기, 실패한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 간에도 집단기억을 둘러싼 기억투쟁이 벌어진다. 대표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을 둘러싼 기억전쟁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당사국들이 서로 다른 기억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기억이 세계정세와 각국의 역사, 문화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도 연구된 바 있다(박찬승 2017). 특히 동아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각국의 집단기억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역사 분쟁으로 연결되었으며, 한·중·일 3국의 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에 대한 집단기억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적극 활용되기도 하며(가령 러시아의 푸틴 정권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집단기억 활용),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집단기억은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통제하고 사회를 조직”한다(박찬승 2017).

물론 완벽하게 ‘동질적인 기억’은 존재할 수 없으며, 거대 집단인 국가 간에는 자연히 집단기억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서 비롯되는 집단 사이의 갈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하여 박찬승 등은 결국 인권, 자유, 민주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관에 근거한 집단기억이 우세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다(박찬승 엮음 2017).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집단기억은 점차 소멸해간다는 것이다. 집단기억에서 사회정의와 윤리의 문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과제다. 『기억의 지도』의 저자인 제프리 올릭은 집단적인 기억행위는 본질적으로 도덕 명령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책임윤리에 입각한 후회의 정치(The Politics of Regret)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문화유산이나 장소에 대한 집단기억도 다층적이다. 일본 하시마섬(군함도)이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하지만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희생자들의 기억을 조직적으로 외면했다고 지적하며” 등재과정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윤지환, 김숙진 2020). 윤지환, 김숙진(2020)은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의 특정 기억의 선택

적 배제”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제도의 가치를 희석시켰다고 비판하였다. 문화유산의 ‘장소성’ 규정은 때로 집단기억의 전쟁과 다름없다. 문화유산이나 장소에 축적된 집단기억은 다층적일 수 있으며 때로는 기억투쟁이, 때로는 포용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프랑스의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는 근대 서구사회에서 많은 기억 유물(기념물, 박물관, 기록관 등)이 지어진 것은, 지리적 이동이라는 압박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쇠퇴하면서 집단기억에 필요한 사회적 과정이 서서히 파괴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Nora 1989). 기억의 장소가 집단기억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기보다는 집단기억 쇠퇴의 증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록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기록을 강조하는 것이 반드시 강하고 활기찬 집단기억의 지표가 아니며 심지어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보존기록과 집단기억을 동일시할 수 없으며, 기록의 수집과 축적으로 집단기억을 형성했다고 말할 수 없다.

집단기억 논의에서 기록 실천과 관련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기억은 사회 전체 혹은 공동체, 개인의 현재 삶과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집단기억이 존재하며, 집단기억의 재현도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집단기억의 형성이라는 역할에는 수많은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지배여론을 지배계급의 이익과 동일시”하거나(이종흡 2018, 467), “피해자, 소수집단의 입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위험을 피할 수는 없다.²⁾ ‘확증 편향’을 조장하는 현대의 정보소비 환경에서 집단 간 기억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 지향이 없는 집단기억의 형성은 사회적 해악이 될 수 있다. 그

2) 아키비스트는 피지배계급 혹은 사회적 약자의 집단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를 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가령 매사추세츠주 세일럼(Salem)의 무속인 처형지에 대한 지리정보는 그 지역 지배계급의 조작이나 강요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지우고 싶어 하는 지역 주민들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소멸된 것이다(이종흡 2018, 467).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 기억의 말살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이를 보존하려는 기록전문직 간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러나 윤리와 사회정의라는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formula)이 없다는 점에서 집단기억과 관련된 기록의 실천은 곤혹스럽다.

그러나 일반론으로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공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각 개인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된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 참정권이나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기억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집단의 기억이 평등하게 기억될 권리가 포함된다. 한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공정함이란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집단기억에서 배제되었던 기억을 형성하도록 우선 보장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권리, 기억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평등과 차등을 고려한 가치는 공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기록전문직의 끊임없는 윤리적 성찰 없이 기록 정의를 실천하기는 어렵다.

(3) 사회적 기억, 집단기억, 공식기억

이에 덧붙여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에서 집단기억과 사회적 기억, 공공 기억을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사회적 기억이나 집단기억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정근식 2013), 집단기억을 사회적 기억, 공공 기억과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다. 사회적 기억은 친족이나 이웃, 도시, 지역 등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억으로, 집단기억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대사건에 대해 갖는 기억으로 구분하였다. 즉, 사회적 기억은 공유된 경험이나 역사, 장소, 프로젝트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반면, 집단기억은 그런 공통의 기반이 없이 주어진 인구가 공유하게 되는 기억이라는 것이다(정근식 2013). 집단기억이 동질성을 추구한다면 사회적 기억은 다양성을 추구하며 다양성 속에서 동질성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드러낸다. 따라서 사회적 기억 연구에서는 “개인적 기억의 사회화 과정과 집단기억의

개별화 과정"에 관심을 둔다(권귀숙 2001, 204). 기록학 논문에서도 집단 기억과 사회적 기억을 대체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강조하는 지점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실천적 기록활동을 이야기할 때에는 집단기억보다 사회적 기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김명훈 2014; 윤은하, 김유승 2016; 신동희, 김유승 2016; 최정은 2011)

한편 공공 기억은 “정부와 시민을 포함하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진 과거에 대한 인식”(Cox 2005)으로서 공식 장소와 실재, 공식 토론 및 기념화 등의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정근식 2013). 흔히 공식기억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된다. 가령 ‘미군의 노근리 민간인 학살사건’과 같이 오랫동안 상실되었던 역사가 사회적 기억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고 제도적 절차를 거쳐 기념화가 가능해지는 과정을 공식기억으로의 전환으로 본다(윤은하, 김유승 2016). 이정연(2015)은 5·18 광주민주항쟁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이 펼친 운동을 자신들이 폭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염원하던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국가권력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며, 과거청산을 통해 새로운 ‘공식기억’의 형성을 요구하는 기억투쟁이라고 보았다.

2) 기억담론의 흐름과 실천적 성격

문자 발명은 인간이 기억을 본격적으로 외재화(外在化)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기록은 인간 기억의 확장이다. 어떤 사건들에 대한 개인적 기억을 가진 이들에게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은 기억을 강화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역할을 한다. 후대 사람들에게 기록은 기억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록은 기억의 시공간적인 한계를 보완하며 기억의 공유를 가능케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기억매체라고 부른다. 이는 기록이 기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기억을 수정·강화하는 매체라는 뜻이지 기록이 곧 기억이라는 것은 아니다. 기록관리가 시작되면서 기록과 기억과의 관계는 이

런 정도로 받아들여졌으며 기록을 기억과 등치시키는 문장은 다만 수사적 표현이었을 따름이었다. 기억담론의 흐름에 대해서는 장대환, 김익한(2019)의 연구에서 잘 정리되었으나 실천적 관점에서 재정리하였다.

(1) 기록물관리기관은 집단기억을 형성하는 문화유산기관이다

기록학에서 기억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1980년대 초 캐나다의 기록학자 휴 테일러의 논문에서였다(Taylor 1982). 1980~90년대 붐을 이룬 역사학계에서의 기억담론은 “기존 역사서술에 짓눌린 생생한 집단기억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지만 기록학에서 기억담론의 출현 배경은 이와 달랐다.

1980년대까지도 많은 서구 국가들에서 기록관리기관은 정부의 행정부서 중 하나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시민들의 삶과 관련 있는 조직”은 아니었다. 따라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징이 필요했다. 정부나 모 기관의 부속 기관이 아니라 “집단기억의 능동적 전승자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시민사회를 설득하는 데에 효과적이었을 것이다(이종흡 2018). 특히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가까운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문화유산기관이자 기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였다. 테일러는 기록물관리기관이 문화 유물로서 기록을 부각하는 공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서관, 박물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집단기억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Taylor 1982). 기록물관리기관이 기억기관이라는 선언이 그저 홍보용 수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에 합당한 사명(mission)의 설정과 실천이 필요하다.

(2) 기록은 집단기억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테리 쿡(Terry Cook), 에릭 케텔라(Eric Ketelaar),

번 해리스(Verne Harris), 브라이언 브로드먼(Brien Brothman) 등의 기록학자들이 기억담론을 재점화하였다. 집단기억에 관한 이 연구들이 탐구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존기록이 과연 집단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집단기억과 관련된 여러 매체와 비교할 때 보존기록만의 고유한 역할과 특징이 있는지, 보존기록 및 보존기록관이 기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무엇인지 등이 다루어졌다(Jacobsen, Punzalan and Hedstrom 2013). 아키비스트는 수집 및 평가를 통해 무엇을 기억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보존기록관은 기억 생성에 있어서 중개 역할을 하며(Hedstrom 2002) 기억의 원천으로서 아카이브는 의도적 집합화의 결과물이다. 이런 점에서 지머슨은 ‘아카이브 기억(archival memory)’을 “구성된 기억(constructed memory)으로서의 아카이브”라고 명명했다(Jimerson 2009).

먼저 기록과 기억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이는 슈와츠와 쿡이다(Schwartz and Cook 2002). 이들은 기록이 증거이자 기억으로 양자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포스트모더니즘 기억담론을 강하게 주장한 브로드먼은 기록을 보는 관점 자체의 전환을 주장하며 이를 비판한다(Brothman 2001). 브로드먼은 선형적 내러티브를 중시하는 증거접근법이 아니라 기록에 대한 해석을 중시하는 기억 접근법으로 이동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박물관, 기념행사, 각종 매체와 문학·예술 작품, 역사 교과서, 구술, 의례, 공연과 축제, 기념물이나 건축 등과 같이 보존기록 외에도 수많은 집단기억의 매개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존기록의 고유하고 특별한 역할이 존재하는지도 담론의 주제였다. 푸트(Foote 1990)와 지머슨(Jimerson 2009)은 다른 집단기억 매체와 구분되는 보존기록의 특징을 고정성으로 보았다. 푸트는 보존기록을 세대를 넘어 지속적인 정보 전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소통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확장”이라는 보존기록의 잠재력을 강조하였다(Foote 1990). 지머슨은 푸트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 기억을 영구화하기 위해 고정된 물체에 기억을 부착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였다(Jimerson 2009, 211).

기억은 기록 밖에 존재하지만 집단기억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기록이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이나 기록관리, 아키비스트가 기억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Jacobsen, Punzalan and Hedstrom 2013; Joias 2011)). 보존기록이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하여 헤드스트롬은 “보존기록이 잃어버린 기억의 잠재적 발견이나 복구의 원천”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존 기록이 동원되는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Hedstrom 2010).

보존기록이 집단기억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 중 실천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로라 밀러는 모은 기록 자체가 기억이 아니며 “접근이 이루어져 읽히고 이용될 때 과거 사건들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보았다(Millar 2006). 즉 이용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집단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추모 및 기념 활동에 대한 기록화를 통해 집단기억이 축적될 수 있다. 마이클 피거트는 호주의 박물관과 기념관의 사례를 들면서, 기록이 기념 활동과 관련될 때 집단기억의 형성에 긴밀하게 개입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박물관이나 기념관과 같은 추모 전용 공간이나 기관에서도 다양한 기념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모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기념 활동의 기록은 그 자체로 기념물이 되고, 추모와 기념 과정 자체가 집단기억의 일부가 될 수 있다(Jacobsen, Punzalan and Hedstrom 2013, 225).

셋째, 기록물관리기관이 일반 대중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콕스(Richard Cox)는 보존기록관이 아웃리치, 공공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을 통해 집단기억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Cox 1993). 기억의 관점에서 보면, 기록물관리기관은 연구자나 학자 중심의 이용자에서 더 폭넓은 대중들과 교류하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웹의 상호작용 기능도 집단기억에 관여하거나 이를 육성하는 열린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케틀라는 웹 기술을 이용하여 대중들이 기록에 담긴 사건들을 다양한 버전으로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면 아카이브를 사회적 “기억의 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Ketelaar 2008, 2014).

마지막으로 집단기억 형성자라는 보존기록관의 역할에 비추어보면, 관리해야 하는 개체가 확장되어야 한다. 많은 사회에서 집단기억은 물리적 증거나 기록 증거라는 수단보다 이야기, 전통 관습, 의례, 기념, 그리고 행동 방식 등을 통해 더 많이 보존된다. 예를 들어, 바스티앙은 “사건과 기억에 대한 기록의 연속성(archival continuum of event and memory)”을 높이기 위하여 아키비스트가 집단기억의 징후와 표현을 기록하는데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요청한다(Bastian 2009, 129). 바스티앙은 기억은 “사건 자체의 확장”이며, 아카이브를 통해 기억과 대항기억을 연결하는 것은 기록되지 않았거나 소홀하게 기록된 공간들을 채우고, 기록을 강화, 확대, 맥락화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Bastian 2009, 119). 바스티앙은 “기억 텍스트(memory tex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화 공연과 분산적 기억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전통적인 기록 형식의 한계를 넘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Bastian 2006).

(3) 아카이브를 통한 집단기억의 강화와 왜곡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카이브를 통한 집단기억의 강화와 왜곡에 초점을 맞춘 일군의 연구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보존기록이 제시하는 기억은 믿을 만한가?”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여러 편의 경험 기반의 사례 연구는 아카이브가 어떻게 특정 상황에서 집단기억을 강화, 삭제, 구성, 왜곡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영역에서의 대표 논객은 남아공의 기록학자 번 해리스다.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남겨진 보존기록의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남겨진 기록의 불완전성이다. 보존기록관에는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사건과 프로세스의 극히 일부만이 남겨진다. 기록이 과거 사건들에 대한 완전

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아주 작은 조각”만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Harris 2002). 둘째, “기록은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이고, 억압적인 정권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작되는 경우도 많으며, 따라서 오랫동안 지배 엘리트 집단의 통치를 받거나, 인종분리정책 이후의 남아공과 같은 신생 사회에서 보존기록이 제공하는 기억 기반은 빈약하다. 기록은 ‘집단기억’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으며 오히려 특정 상황에 종속적이고 부분적인 진실만을 보여준다(Harris 1997).

케틀라는 보존기록을 통하여 집단기억의 재구성이나 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할 때 전체주의 정권에서 만들어진 보존기록과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Ketleaar 2014). 첫째, 전체주의 정권에서 만들어진 아카이브의 경우, 반드시 집단기억의 재구성에 대한 정권의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식기록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기록을 고의로 폐기한 결과 보존기록관에서는 왜곡된 집단기억만을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

둘째, 공동체 아카이브의 경우로, 공동체와 그들의 기록, 기억과 정체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기록과 기억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로는 바스티앙의 연구를 꼽는다. 바스티앙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를 사례로 한 논문에서 식민통치가 끝나고 대부분의 공식 기록이 모두 미국과 덴마크 국립기록관으로 옮겨진 환경에서 버진아일랜드 사람들이 구술과 노래, 축제 등을 통해 집단기억을 재구성하고 공동체 정체성이 강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Bastian 2003, 2009; Josias 2011; 윤은하 2012). 최근 우리나라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마을아카이빙이나 여타의 공동체 아카이빙 작업이 공동체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배제와 선택의 기억 정치는 일어난다. 기록물관리 기관이 합법적인 수집정책에 의거하여, 의도적으로 특정한 부류의 기록만을 수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1999년 ‘흑인 및 아시아인 연구

협회(Black and Asian Studies Association)'가 전국 112개 기관의 보존기록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거의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이 흑인 조직이나 흑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영국 기록학자 플린(Andrew Flinn)은 주류의 공공 기록물관리기관은 여전히 비 엘리트집단, 서민,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Flinn 2007).

이밖에 “보존기록이 과거의 활동에 대한 중립적이거나 믿을 수 있는 완전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전통적인 믿음에는 비판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며, 평가 선별, 조직, 보존과 같은 표준적인 기록관리 기능이 집단기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다(Jacobsen, Punzalan and Hedstrom 2013). 기능적으로 보이는 보존기록관리 업무에도 정치적 동기와 영향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권력 집단이 보존기록을 통해 심각한 집단기억의 왜곡을 초래했을 때 기억 재구성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남아공 사례와 관련하여 호시아스는 공공기록관리시스템에 남겨진 인종차별에 관한 기록의 왜곡을 비판하며, 차별정책 종식 이후 집단기억의 사회적 재구성을 위해서 기록물관리기관, 박물관, 그밖의 기억 프로젝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Josias 2011). 보존기록은 집단기억이 지속될 때가 아니라 오랫동안 잊혔거나 소문은 있지만 증거가 없거나 억압되고 비밀에 부쳐진 사건과 생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유일한 원천일 때에 가장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 복원하기 위한 기록활동이 필요하고, 이는 곧 기억투쟁의 성격을 갖는다.

서구 역사학계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집단기억을 회복하는 것이 사회정의라는 하워드 진과 같은 역사학자의 주장이 미셸 푸코의 미시권력 개념과 결합하여 기억투쟁의 개념으로 전개되었다(이종흡 2018, 460-461).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다양한 집단기억은 “국민 공통의 과거로 축소 환원되었고” 이때 주변으로 밀려난 집단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투쟁에서 미셸 푸코가 설정한 ‘대항기억(counter-memory)’은 당시 역사학계의 기억담론을 관통하

는 키워드가 되었다(이종흡 2018, 461). 기록학에서 기억투쟁은 기록과 권력, 사회정의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므로 다음 절에서 다루겠다.

(4) 사회정의를 위한 기록활동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

보존기록을 사회정의와 권력의 관계 속에서 탐구하는 연구에서 기억은 소외된 주변부 집단이나 사회정의와 관련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에 사용된다. 세계적으로 1990년대에 일어난 정치적 격변과 수많은 기록 스캔들은 서구의 아키비스트들에게 기억 소멸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책임감을 불러일으켰다(Hedstrom 2010).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동유럽의 신생 국가 설립, 발칸 전쟁, 남아프리카 인종차별정책의 종말, 캄보디아나 몇몇 남미 국가의 독재 정부가 생산한 기록의 공개를 둘러싼 사건은 모두 아키비스트들에게 윤리적 책무를 제기하였는데, 가령 범법행위 연루자와 관련된 비밀 기록을 재분류하고, 불법적으로 파기된 기록물을 찾아 배우며 권력자나 사회의 대다수가 잊고자 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과 같은 책무였다(Hedstrom 2010). 집단기억이 보존기록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되면서 아키비스트들은 기록을 과거의 보존과 역사의 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와 정체성 확립, 화해 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Hedstrom 2010).

기억의 중요성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급작스런 권력 이동,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사회적 격변기에 명백히 드러난다. 홀로코스트,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남미국가에서의 해방 운동, 남아프리카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투쟁 등은 역사연구의 주제이자 기억 재구성 프로젝트이다(Hedstrom 2010). 전쟁과 같은 대규모 역사적 사건이나 억압체제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인권 유린 등을 조사할 때 증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공공기록관에는 정치권력 집단이나 지배엘리트가 의도적으로 조성한 기록 외에는 폐기되었고, 남아있다 해도 대부분의 문서 증거는 왜곡되어 있거나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기억을 통한 새로운 역사쓰기가 필요하다. 엄청난 역사적 사

건은 그것을 목격하거나 참여하고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 기억에는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호시아스는 인종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남아공에서 다양한 기관이 추진한 공공 전시, 구술사 수집, 대중과의 대화를 “새로운 기억”의 구축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로 전통적인 기록물관리기관의 밖에서 행해진 작업들이지만 그 과정에 이루어진 기록활동(예를 들어 구술)은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Josias 2011; Jacobsen, Punzalan and Hedstrom 2013). 정치 변혁과 사회정의에 대한 요구가 기억과 관련된 기록활동으로 표현된 사례다.

그러나 기억, 구술사, 목격 및 희생의 증거와 같은 기억 흔적을 이용하는 것은 대체로 복잡하다. 과거에 일어났을지도 모를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에 관한 대체 불가능한 증언을 해줄 개인이나 목격자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Harris 2002). 또한 고통의 기억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록된 과거’와 ‘경험한 과거’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기록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제안된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① 진상규명 촉구 및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기록활동

억압적 정치 체제에서 자행된 범죄와 인권 유린을 입증하는 과정에서의 기록활동이다. 진상조사를 위한 기록을 수집, 발굴, 생산하고,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조직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작업에 아키비스트의 참여가 필요하다. 공동체에 대한 범죄를 문서화할 증거가 없을 때, 기억은 정의를 세우고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기억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것을 보존기록관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아키비스트는 기억의 사회정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제공해야 한다(Valderhaug 2011). 특히 국제사법재판소나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조사자료와 회의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해야 한다. 이때 조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맥락정보의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정연(2015)은 5·18 민주화운동 이후의 유족, 구속자, 부상자 등 피해자와 가족들이 30년 넘게 전개한 기억투쟁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억투쟁은 감시를 피해 수집한 자료와 증언 채록, 각종 출판물로 나타난다. 이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폭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염원하였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며 이러한 인정투쟁은 파괴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운동”의 성격을 갖는다(이정연 2015, 130-131). 이러한 기억투쟁을 위해서는 증언 채록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와 매체의 기록으로 확장하여 수집하고 다양한 출처의 기록을 수집하여 그 맥락을 풍부하게 기술하고 연계해야 한다(이정연 2015). 이는 본격적인 조사가 되기 전에 대체로 피해자 공동체와 이를 지원하는 활동가가 중심이 된다. 활동가 아키비스트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② 진상규명 이후 기록의 관리와 기억의 유지·확산

독재정권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었거나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 그 유가족들은 오랫동안 기억의 억압 상태를 견뎌야 하는데, 과거사 진상규명이나 보상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도 이들의 기억투쟁은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정연(2015)은 현재 5·18 아카이브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생산된 기록과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기록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그 시간적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희생자, 생존자, 유가족, 관찰자로서 국민이 지금까지 5·18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기록화하고, 관련 의례나 기념식, 활동에 관한 기록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정연 2015, 148-149).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을 위해 수집한 기록을 보존하고 조직하여, 과거 폭력의 진상을 알리고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와 공감을 확산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진실위원회가 수집, 생산

한 기록을 기억과 연관하여 분석한 작업의 사례로 난넬리(Nannelli 2009)의 연구가 있다. 난넬리(Nannelli)는 인도네시아 정권이 조직한 동티모르에서의 인권침해조사위원회가 만든 기록의 속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위원회가 처한 정치 환경과 규제 속에서 기억에서 도출된 개인적이고 집단적 증언을 받고 이에 의존하여 조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증언을 뒷받침할 과거의 잔학행위에 대한 실질적 증거도 부족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은 앞으로의 범죄 재발을 막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을 읽을 때에는 생산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맥락이 기록의 내용 구성과 기록의 사용 및 독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Nannelli 2009, 39; Jacobsen, Punzalan and Hedstrom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 기술 작업은 기억투쟁에서 아키비스트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될 것이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전범 재판기록’에는 증인 319명의 진술이 녹음된 테이프가 포함되어 있다. 원래 이 테이프는 1963년~1965년까지 진행된 나치 전범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 도중에 증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보조 장치용으로 녹음되었으나 현재는 더욱 고유하고 가치 있는 기록물로 인정되고 있다. 재판장에서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이 종전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해자들과 대면하는 장면이 담긴 이 기록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 문화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러한 기록을 보존하고 공개하는 것은 재판적이나 위원회 활동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종 말살의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국면을 목격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애도와 기억의 공동체를 넓혀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추모활동과의 연계

보존기록관은 피해자, 생존자와 그 가족들, 때로는 난민이나 억압받는 공

동체를 위한 애도와 추모 활동의 장소로도 사용될 수 있다(Caswell 2010, 41; Jacobsen, Punzalan and Hedstrom 2013). 이러한 추모활동 자체가 집단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이다(Caswell 2010, 41). 보존기록관은 부당하거나 잔혹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추모와 기억의 회복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앞서서도 밝혔듯이 추모 및 기념 활동에 대한 기록화는 사회적 기억 형성에 기여한다.

④ 인권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 활동

과거의 인권침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증언을 들어야 한다. 트라우마적인 고통을 경험한 개인으로부터 사건의 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듣고자 하지만 이들은 이를 거부하기도 하고, 수용하더라도 기억과정은 이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다시 겪게 한다(Hedstrom 2010). 따라서 이로부터 구술을 듣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은 반드시 치유를 위한 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오랫동안 왜곡된 공식기억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가 기록활동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소통의 아카이브 구축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억을 유지하고 기억공동체를 확산하기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의 구축이다. 이경래는 과거사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설립된 진실 화해위원회의 아카이브가 ‘기록 정의’에 입각하여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기록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재맥락화(맥락정보 및 각종 자료와의 관계를 제공하는 방식)가 이루어져야 한다(이경래 2015). 이러한 아카이브는 피해자 중심의 맥락이 포함된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 피해자나 활동가들이 이야기를 쓰거나 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3. 기억담론에서의 기록 실천 모형

1) 모형 설계의 배경

(1) 기록을 보는 관점

현대 기록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증거 중심의 접근법이 주류를 형성했으며, 기억을 중시하는 접근법은 주관적이며 증거의 엄격함을 훼손한다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기억담론은 이러한 증거 중심의 기록관리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³⁾ 우선 기억담론에서는 기록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증거의 기록학에서는 기록을 객관적 실재의 재현물로 본다. 기록관리의 목표도 기록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와 가장 유사하게 재현하는 것이다(장대환, 김익한 2019). 반면 기억담론에서,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학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실재는 없으며 기록 자체도 실재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모여도 하나의 완전체를 구성하지는 않으며(완전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해석과정(기록을 만드는 과정)과 그것을 재해석하는 과정(기록을 이용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설문원(2020)이 제시한 ‘문화 아카이빙’도 이러한 기억담론에 입각해 있다. 기록을 보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실천의 차이를 낳는다.

기억의 동학(動學) 속에 보존기록을 위치 짓는다는 것은 증거나 역사 중심의 기록관리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과거’를 보는 입장이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브로드먼은 아키비스트를 두 가지 범주, 즉 ‘역사 아키비스트’와 ‘기억 아키비스트’로 나누었다(Brothman 2001).

3) 일부 비판은 증거 접근법 자체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간의 기록관리가 지배계층이나 사회 주류집단의 철학에 순응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억 아키비스트는 지식 통합, 사회적 정체성, 집단 의식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료로서 과거의 잔여 유산에 관심이 있다. 역사 아키비스트는 우리 것이지만 우리와 다른, 과거에 대한 선행적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하여 기록을 찾고 기록 안에서 증거를 발견하는 데 관심이 있다.”(Brothman 2001, 62)

여기서 역사 아키비스트는 기존의 증거 중심의 입장을 갖는다. 증거의 관점에서는 어떤 행위나 사건의 자초지종을 확인하거나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필요한 기록을 중시한다. 행위나 사건이라는,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사실을 확인하거나 고고학에서 ‘잃어버린 조각(lacuna)’을 찾듯이 실재의 재현을 보강할 기록을 수집한다. 반면 기억의 관점에는 무언가를 입증하거나 진상을 규명하는 것보다 현재 시점에서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의 주체를 존중하는 태도가 깔려있다.

구술을 사례로 양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흔히 구술은 기억 접근법에서만 중시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구술사는 한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생애사, 면담을 통해 사료에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복원하거나 재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권기숙 2001, 204). 이는 증거 접근법과 일맥상통한다.

반면 기억은 “과거를 재구성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구술사가 사료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들을 구술을 통해 전체를 사실대로 복원”하고자 한다면, 기억은 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것”이다. 질문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때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하는가?”가 되는데, 후자는 현재의 상태를 반영한 질문이다.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현재의 문제이고, 현재 상황에 따라 어떤 부분이 강조되거나 억압되거나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권기숙 2001, 204). 증거 접근법의 나침반은 과거를 가리키지만 기억 접근법이 가리키는 것은 현재이다.

(2) 실천 지향성 : 기록활동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천

아키비스트가 사회적 책임을 모색하는 성찰적 학술연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2011년 발행된 *Archival Science*의 특집호 편집자인 데이비드 월래스는 ‘기억 형성의 윤리’라는 시각에서 보존기록에 접근한다. 그는 아카이브, 기억, 정치, 사회정의 간의 고리를 추적하며 아키비스트가 ‘과거에 대한 새로운 버전’의 생성(과거의 해석)이라는 정치적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할 때 아키비스트의 활동은 과거의 부당성과 권력구조를 밝히는 것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정의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Wallace 2011).

앞에서도 밝혔듯이 기록학에서 기억담론은 집단기억의 능동적 형성이라는 기록전문직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전개되었다. 그러한 실천에서 중요한 조건은 사회정의에 입각한 윤리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윤리 없는 집단기억의 구축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활용한 실천에다 사회 정의라는 정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가 부가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archival justice’란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국내에서는 ‘아카이브 정의’ ‘기록 정의’ 등으로 번역되면서 기록활동을 통해 사회 평등에 기여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된다(장대환, 김익한 2020, 306). 기록을 매개로 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사회정의에 적극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 실천의 정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기록 정의’에 이어지는 개념이 ‘archival activism’이다. 이는 “아키비스트가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치중립적인 보관자(keeper)로서의 역할보다는 가치지향적인 활동가로서 능동적이고 실천적 방식으로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고 부당함을 종식시키기 위해 기록관리의 구태에 도전하는 행위”로 정의된다(이현정 2014; 이경래 2015). 한편 활동가 아키비스트의 관점이 아니라 기억투쟁의 주체, 즉 사건 피해당사자와 적극적 연대 주체들의 실천적 활동에 더 초점을 두기도 한다(이경래 2017, 66).

‘기록학 실천주의’ ‘아카이브 액티비즘’ 등 다양한 대역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록 실천주의’를 사용하였다. 기억의 기록학에서는 사회정의라는 윤리적 가치를 담을 수밖에 없으며 정치사회적 참여와 실천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사회정의라는 방향성을 추구하는 실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3) 범주 구분과 고려사항

국내 기록학계에서 기억담론은 최정은(2011)과 윤은하(2012)의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최정은(2011)은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를 위하여 아키비스트가 구술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은하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기억담론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을 두루 분석하였으며, 특히 공동체의 정체성과 기록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후 김명훈(2014), 신동희·김유승(2016), 윤은하·김유승(2016), 등은 아카이브를 통한 사회적 기억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외집단, 공식기억에서 배제되었던 사건과 사람들을 포용하는 기록활동을 강조하였다. 이경래(2015), 이경래·이광석(2017)은 집단기억과 대항기억을 다루고 있다. 이경래(2015)는 ‘아카이브 정의(archival justice)’의 개념을 적용하여, 국가 폭력의 피해 당사자를 위한 진실화해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대적 재구성’이란 집단기억의 의도적 형성을 의미한다. 이경래·이광석(2017)의 논문에서는 용산참사 사건을 사례로 예술적 실천을 통한 대항기억을 다루고 있다. 이영남의 일련의 연구들(2008, 2012, 2019, 2020)은 개 개인의 생활과 감성을 중시하는 기록작업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록학보다는 ‘인간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넓게는 기억 관점의 기록학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장대환, 김익한(2019)은 사회정의에 입각한 기록 실천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적 평등의 개념에 입각하여 소수자의 기억을 표현하고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재난 피해자들

을 위한 치유와 극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분쟁이나 갈등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집단기억의 저장소로서 아카이브를 상호 이해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억담론에서의 논의와 국내 선행 연구를 토대로 기억의 기록학이 제시하는 실천 범주를 기억기관, 기억투쟁, 기억과정, 트라우마 기억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각 범주는 개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중첩적이다. 다만 활동의 전개방식 차이에 근거하여 범주를 구분하였으며 범주별 문제를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1> 실천 범주별 핵심 가치와 의미

범주	핵심가치	실천 과제 도출을 위한 질문
기억 기관	공정	기록기관으로서 기록물관리기관은 사회적 기억 형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기억 투쟁	진실 규명	과거사 및 동시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히 집단기억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하여 기록전문직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회복적 기억	인권 회복	사회적 참사나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기억을 치유하기 위한 기록 실천이란 무엇인가?
기억 과정	포용·통합	공동체의 기억과정에 기록전문직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

첫째, 기록물관리기관은 기억기관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사회적 기억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정의와 관련된 가치는 ‘공정’이며, 모든 사회계층의 기억될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기록전문직은 과거사 및 동시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억투쟁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진실 규명’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진실 규명은 인권회복, 공정, 포용과 통합이라는 가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셋째, 기록전문직은 재난이나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트라우마 기억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사회적 참사가 많았던 한국 사회에서 이는 기억투쟁과 떼어놓을 수 없는 과제이며, 인권과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e)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난제일 것이다. 따라서 기록학의 여러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치유는 ‘회복적 기억 정의의 추구’라는 범주로 따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기록전문직은 공동체의 기억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활동의 핵심 가치는 통합과 포용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천이다. 공동체가 아카이브 작업을 하는 이유는 결과물보다는 과정에 있으며, 공동체의 자존감, 사회적 인정, 정체성과 같은 가치를 지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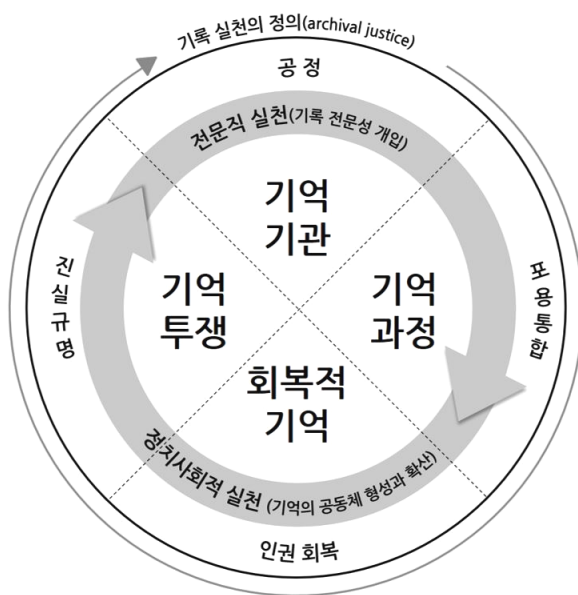
이 중 두 번째 영역인 기억투쟁과 네 번째 영역인 기억과정은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에서 실천 방식도 달라야 한다. 독일의 학자 알프 뢰트케는 기억의 정치(politics of memory)와 기억하기(practices of remembrance)를 구분하였는데, ‘기억의 정치’가 개별적 기억이 국가의 공식기억으로 규정되어 이를 기념하고 대중적으로 교육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한다면, ‘기억하기’는 “개별적 경험을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추구한다(이승억 2013, 315). 이에 대해 이승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기억의 정치’가 통합을 지향하는 거대 서사 구조를 가진 기억의 제도화라면 ‘기억하기’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일상화된 기억의 개별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전자가 목적의식적으로 구축되는 것이라면, 후자는 개인의 의식과 삶에 침착된다. ‘기억의 정치’나 ‘기억하기’를 보존기록을 통한 기억의 사회화와 연계할 경우 양자는 구별되는 정의와 방법론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이승억 2013, 315).

4)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란 어떠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관여시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요구, 의무를 함께 확인하고 다루는 과정이다.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 회복 조치의 대략적인 윤곽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회복 과정에서 가해자의 잘못 인정, 속죄, 사과가 중요한데, 이는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용서, 화해, 나아가 가해자의 공동체에의 재통합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 개념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은 사회를 치유하고 화해와 통합을 이루어 내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송에스더 2020). 이런 점에 착안하여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의 저자 이현정은 트라우마 기억의 치유를 ‘회복적 기억’으로 명명하였다(2012. 1. 21 전화 면담).

범주별로 실천을 위해서는 기록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 측면과 정치사회적 실천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기록정의의 실천에 관한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1> 기억담론에서의 기록 실천 모형



이 모형에서는 전문직 측면과 정치사회적 측면의 실천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첫째, 기록전문직의 역할, 즉 전문성이 개입되는 정도와 방식이다. 전문성을 발휘하거나 개입하는 정도와 방식이 범주별로 다르다고 보았다. 둘째, 기억공동체의 형성과 확산이라는 사회적 실천의 측면이다. 물론 실제 활동에서 양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상호적이지만 각기 필요로 하는 역량에는 차이가 있다.

기억 접근법이 요구하는 실천은 기관이나 조직 내부의 영역을 넘어 제도

개선, 정치·사회적 개혁, 혹은 인권운동의 영역으로 확장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결국 해당 사안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과정이며 해당 사안에 관한 ‘기억의 공동체’를 형성·확장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기억기관 : 사회적 기억의 형성자 역할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록제도에서는 기록물관리기관이 사회의 다양한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어렵다. 기억기관으로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정체성을 정책과 제도로 구현한 나라는 캐나다였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캐나다 국가도서관·기록원(LAC) 원장을 지낸 이안 윌슨은 캐나다 보존기록관들이 1980년대에 협동작업을 통해 기록문화유산의 전승자로 성장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나 모기관”보다 “시민사회의 관점”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Ian Wilson 1990, 91-92; 이종흡 2018에서 재인용).

그러나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공공기록관리기관들은 사회적 기억 형성자로서의 자기 위상을 설정한 바가 없다. 서울기록원이나 경남기록원과 같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시민이나 도민의 기록을 수집하거나 이들의 기록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약간은 근접해 있을 수도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본질적으로 문화기관이다. 기억기관으로서의 위상은 문화기관으로서의 성찰과 함께 모색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아직 행정기관의 정체성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록전문직은 집단기억 혹은 사회적 기억과 관련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기록물관리기관이 사회적 기억의 형성이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토론과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집단기억과 관련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록원이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주

체가 되는 활동이다. 평가·선별을 포함한 기록관리과정이 집단기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기록화, 혹은 지방기록화 정책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국가가 어떤 기록을 수집해야 하는지를 집단기억 혹은 사회적 기억의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고려할 가치는 ‘공정’이다. 이는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과소 대표되었던 소외집단이나 사건 등의 기록화를 지원하는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기록화는 반드시 수집이나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산 주체의 직접 관리 및 네트워킹을 포함하는 것이며 다양한 기록자원들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보존기록관들은 민간이나 지역단체, 역사 속에 가려져 있던 인물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사회운동의 기록과 개인 기록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지방, 성정체성, 인종·민족적 정체성, 여가, 일상 등에 관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카이브들도 설립되었다. 다양한 기억 주체들의 기록을 수집함으로써 사회적 망각에 대처하는 것은 문화적 포용정책이기도 하다.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족의 언어와 전통, 족보(계보), 토지권리와 같은 마오리족의 관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원주민을 위한 특수 기록 서비스 기구를 설립했다.⁵⁾ 캐나다의 아키비스트들은 공공기록과 민간기록 사이의 공백을 채우고 기존의 문서중심의 보존기록관이 다양한 유형의 매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토탈 보존기록관(total archives)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한 사회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공동체를 기록하기 위해서 공적 행정 기록만이 아니라 개인 문서나 기업 기록에 이르는 광범위한 보존 기록을 수집하는 전략이다(한국기록학회 2008). 국가 기록원이 스스로 토탈 아카이브를 지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간기록관리를 지원하는 유일한 제도인 국가지정기록물제도는 극히 협소할 뿐 아니라 지향점도 다르다. 문제는 사회적 기억 형성 측면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

5) The Archives New Zealand, <http://www.archives.govt.nz/servicestomaori.php>

는 공동체 기록화를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분배해야 한다.

둘째, 기록물관리기관이 집단기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기록전문직들은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록의 편향성을 의심해야 한다. 한편 기록물관리기관이 주체가 되어 기록에 해석을 가하는 내러티브 콘텐츠를 개발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이 집단기억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증거 기반의 기록관리에 비해 훨씬 큰 해악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행정기관에 속해있으며 사회적 기억에 관한 전문직 윤리규약이 불분명한 조건이라면 사회정의와 관계없이 정부가 표방하는 공식기억의 틀에 맞춰갈 개연성이 높다. 해석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위험은 인식해야 하며, 생산 맥락 및 작업 주체를 함께 제시하되 ‘객관적’이라는 외투는 입지 말아야 한다.

셋째, 사회적 기억 형성을 촉진하는 지원 활동이다. 공동체 아카이브 등 민간기록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사회적 기억을 아카이브 체계 속에 편입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역의 민간기록과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지방의 민간기록관리뿐만 아니라 소수 공동체나 주변부 집단의 아카이브 지원이 공공정책의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이들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리 지원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다양한 공동체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 근거법률(예: 민간기록진흥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기록학자 케틀라는 아카이브가 “기억의 사회적 공간”이 되려면 다양한 집단의 기억을 기록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stories)를 공공 아카이브와 연계하는 정책과 정보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한다(Ketelaar 2008). 따라서 ‘팔길이 원칙’에 따라 민간 공동체의 기록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거나 협력하는 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 모든 활동에 기록전문직은 자신이 가진 전문지식과 전문직 윤리에 입

각하여 참여해야 한다. 한편 기록관리 활동에 내재된 정치적, 사회적인 의미를 성찰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 내외에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고 실천해야 한다. 기억기관으로서 기록물관리기관이 사회적 기억 형성에 기여하려면 고도의 기록전문성이 필요하며,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공동체 및 기억공동체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회적 실천도 필요하다.

3) 기억투쟁 :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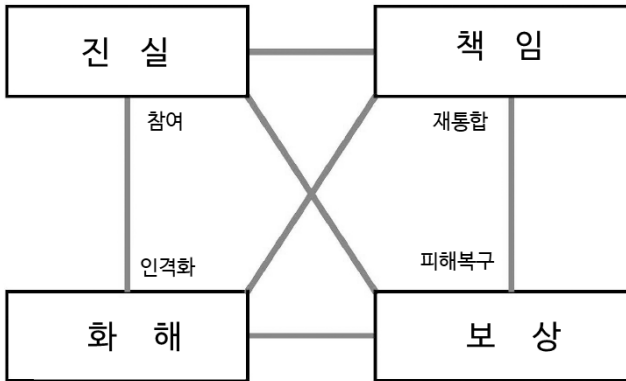
기억투쟁은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이 오랫동안 국가나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되고 피해자 집단의 기억은 배제될 때 필요하다.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기억의 수집 없이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 활동을 사회학자 김동춘은 과거 청산을 “기억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과거 청산은 권력이 삭제하고 억압한 기억을 되살아나게 함으로써 “정의와 공감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김동춘 2013, 438).

기억투쟁에서 기록활동은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① 진상규명 촉구 및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기록활동, ② 진상규명 이후 기록의 관리와 기억의 유지·확산, ③ 추모활동과의 연계, ④ 인권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 활동, ⑤ 소통의 아카이브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식기억을 추구하는 기억투쟁 과정에 필요한 기록활동은 복합적이다. 진상규명에는 증거가 되는 기록의 추적도 필요하고, 이를 보완할 기억도 필요하다. 또한 사건의 직접적 증거는 되지 않지만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 사례는 진실화해위원회나 과거사위원회 등의 기록활동이다. Weitekamp 등(2006)은 대규모의 희생자를 낳은 인권침해 사건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들은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의 구성요소를 진실, 책임, 화해, 보상으로 설정하고 그림 2와 같은 모델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진실은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이때 피해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책임(accountability)은 인권침해를 자행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며 이는 사회 재통합의 전망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앞의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림 2〉 과거사의 회복적 정의를 위한 구성요소
(Weitekamp, et al. 2006, 5)



여기서 ‘진실’은 기록활동과 가장 관련이 높은 요소다. 개인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의 진상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사회 전체가 이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진상을 파악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단기억의 재구성을 위한 첫 단계다. 그러나 진실을 찾는 일은 매우 복잡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진실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Weitekamp et al. 2006, 5에서 재인용).

- (1) 사실적 또는 범죄의 진실 :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확보되고 입증되는 증거
- (2) 개인적이고 서사적인 진실 : 아파트헤이트 치하에서 개인이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말한 수많은 이야기를 의미
- (3) 사회적 혹은 상호적 진실 : 상호 토론과 논의를 통하여 규명됨
- (4) 치유 및 회복적 진실 : 인간관계의 맥락 안에서 파악되는 사실과 그 사실의 의미

이러한 진실의 자료들은 모두 아카이브로 구축되어야 하며 공개와 활용, 참여를 통한 지속적 아카이빙을 통해 집단기억의 재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과거사의 진실을 하나의 거대서사로 만들어가는 작업은 또 다른 성찰을 필요로 한다. 나치 점령기 폴란드에서는 유대인을 밀고하거나 사라진 유대인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치안을 담당하는 폴란드인 ‘청색 경찰’이 조직적으로 나치에 협력했다는 정황도 존재한다. 이렇게 일부 폴란드인이 홀로코스트의 공범자였다는 사실은 “희생자 민족이라는 폴란드의 역사적 이미지에 재앙”이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를 위하여 공식기억에서 지워버린다(임지현 2019). 한편 2006년 11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조선인 B·C급 전범 대부분(86명 가운데 83명)에 대하여 위원회가 ‘일본의 전쟁 책임 전가 행위에 따른 피해자’라고 인정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공식기억에서 이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자”가 된다(임지현 2019).⁶⁾ 이렇게 공식기억이라는 구조 속에서 구체적 진실은 외면될 수 있다. 과거사 진상규명이 공식기억의 도그마에 갇히지 않으려면 철저한 증거에 입각하여 다시 기억하기와 기억투쟁이 이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아카이브는 공식기억에 함몰되지 않는 확장된 기억의 토대가 될 수 있다.

6) 임지현(2019)은 이 책 전체에서 이런 식의 면죄부가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있다.

정원옥(2018)은 의문사유가족 아카이브 작업의 의미를 과거사 진상규명과 ‘애도의 공동체’ 형성으로 보았다. 의문사 진상규명 운동이 30년이 지났고 관련법과 국가기구도 만들어졌지만 진상규명에는 사실상 실패했으며,⁷⁾ 의문사 희생자의 명예회복에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그는 국가 주도 과거청산의 한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주도의 과거청산을 향한 전환점으로 “아카이브”의 가능성을 논한다. 특히 다음세대가 진상규명의 주체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애도의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런 점에서 주목할 것이 이내창기념사업회가 추진 중인 ‘의문사 유가족 아카이브’였다. 이내창기념사업회에서는 의문사 유가족의 목소리를 구술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유가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및 기록물들을 수집, 디지털화하여 정리·보존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정원옥 2018, 81-82).

이렇게 의문사 유가족의 구술·영상·사진·기록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⁸⁾ 첫째, 증거가 부족한 의문사 사건의 특성상 유가족의 증언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또한 유가족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의문사 유가족의 목소리를 사건의 중요 자료로 시급하게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연구자, 학생, 시민 등 의문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사건 희생자 관점의 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다양한 구성원들이 아카이브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과거청산운동의 주체가 구성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원옥(2018, 82-83)은 20대 활동가들이 구술 작업과 영

7) 정원옥(2018, 67)은 1기 의문사위(2000~2002), 2기 의문사위(2003~200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2005~2010)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가의 ‘인정’ 결정은 1기 의문사위 22%, 2기 의문사위 25%, 진화위 10%에 불과하며, 의문사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책임자와 가해자가 적시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진상규명에 실패하였다고 진단한다.

8) 이내창기념사업회가 설정한 아카이브의 구축 목적(정원옥 2018, 81-82)을 부분적으로 재정리하였음.

상 작업을 위하여 의문사 유가족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과정 자체가 애도의 공동체가 확산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내가 겪지 않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희생자들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귀에 기울이며 ‘공동’을 형성해가는 과정이야말로 다음세대에 의한 의문사의 진실규명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아닐까.” (정원옥 2018, 80)

이내창기념사업회의 의문사유가족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은 “국가폭력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다음세대에 의해서도 ‘애도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고, 의문사 문제가 시민사회의 과제로 상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원옥 2018, 78). ‘애도의 공동체’는 일종의 ‘기억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아카이브 실천의 측면에서 보면, ‘애도의 공동체’ 혹은 기억 공동체는 두 가지 차원에서 형성된다. 첫째,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의 증언 채록, 새로 발굴한 기록의 수집과 보존, 기록의 공개를 통해 국가권력의 피해자나 희생자 관점의 기억을 공유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아카이브 결과물이 아니라 아카이브 과정 자체를 통한 애도의 공동체 형성이다. 즉 구술이나 기록수집 등의 활동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분노하고 유가족의 상처에 공감하게 되는데 활동가들과의 토론과 학습이 보강될 때 공동체적 연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아카이브 작업에 기록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히 두 번째 측면에서는 기록관리 전문지식이 개입할 여지도 크지 않다.

한편 기억투쟁이 문화예술활동으로 전개되는 사례도 있다. 이경래·이광석(2017)은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건’(용산참사) 이후 시민, 예술가, 독립미디어 활동가, 종교인들이 전시 및 음악 공연기획과 도록 작업, 만화집, 현장르포 사진집, 미디어 방송, 다큐멘터리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감성과 정서를 기록했던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공식 내러티브에 대항한 경쟁서사, 대항기억의 재구성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이렇게 예술행동가이 사회적 사건들을 기억하는 방식은 기록활동에도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 전진성은 홀로코스트 기억이 박물관, 기념비, 영화, 책, 제의 등 각종 재현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억이 전형적인 이미지들에 고착되어 강박적으로 반복된다고 지적한다(전진성 2009, 28). 인류의 대참사에 대한 기억투쟁은 장기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수많은 재현과 내러티브가 생성되어도 박제된 이미지의 반복은 공감과 기억의 공동체를 확장하는 데에 제약이 될 것이다.

기억의 가변성과 주관성은 한 집단이나 사회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확산하는 데에 제약이 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기록이다. 그러나 어떤 기억이 기록에 담기게 되면서 기억에 내재되어 있던 수많은 감정은 사상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록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며, 기록과 기억의 차이점일 것이다. 어쩌면 고정성과 항구성은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가득 찬 유동적 기억의 포기로 얻을 수 있는 대가(代價)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은 기억을 환기시키는 가장 좋은 매체다. 박제화되기 쉬운 기억 이면에 담긴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억투쟁을 위한 기록활동에서 기존의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은 한계가 있다.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라는 조건은 공정한 판단에 제약이 되며 이는 기록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가령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 아카이브(The South African History Archives)는 1966년 정치적 갈등 환경에서 만들어진 비정부 기관의 사례로서, 공공 부문에서의 통제와 검열에 맞서기 위하여 국가가 통제하는 환경 밖에서 기록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⁹⁾ ‘세월호 기억저장소’가 공공영역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민간의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진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9) 수집한 기록은 현재 University of the Witwatersand, Johannesburg에서 Wits Library Digital Collection의 일부로 서비스 중. <https://www.wits.ac.za/library/digital-collections/> 2019. 4. 13. 검색.

기억투쟁의 성과가 나타나 피해자의 기억이 공식기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5·18아카이브와 같은 기억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기관 위상 때문에 이정연(2015)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수집범위가 사회적 기억이나 기억투쟁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록물관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회적 참사나 인권 침해 사건 등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해야 하며 진실화해위원회나 과거사위원회의 요청에는 인권 보호라는 전문직 윤리에 입각하여 협조해야 한다.

과거사 및 동시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기록활동은 기억투쟁의 성격을 띠게 되며, 이 경우 특히 사회적 실천을 필요로 한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활동이라면 공권력이나 이해관계집단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18광주민주항쟁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억투쟁은 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고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희생자를 위한 애도의 공동체, 기억의 공동체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 사회활동가, 다양한 예술활동가 및 미디어활동가, 아키비스트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기록활동이 전문성이 정치사회적 실천성과 결합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회복적 기억 : 트라우마 기억 치유를 기록활동

앞에서 국가폭력이나 사회적 참사 등과 관련된 과거사 진상규명은 피해자나 유가족들을 위한 치유 활동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진(2017), 장대환·김익한(2019) 등은 아카이브가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트라우마의 치유는 “개인 과 사회의 역사적 상처를 드러내고 이에 공감하면서 희생자를 애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정은진 2017). 그러나 트라우마 기억은 과연 기록으로 치

유될 수 있는 것일까?

고전적인 정신분석학에서는 기억을 습관적 기억, 내러티브 기억, 트라우마 기억으로 구분한다. 내러티브 기억은 “인간이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는 정신활동”이다.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체계에 편입시킴으로써 개인은 정상인의 심리를 유지하며 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내러티브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기억”도 있다. 극도의 충격적 체험은 “내러티브에서 이탈하여 무의식에 고착되어버림으로써 의식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전혀 기억할 수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원초적인 생생함을 유지한 채 순식간에 출몰”하게 되는데 이것이 트라우마 기억이다(전진성 2009, 20-24).

엄청난 재난이나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기억의 상실이 아니라 기억의 귀환이다. 어떠한 진상 규명이나 내러티브를 통한 재현도 이들의 트라우마를 상쇄할 수 없으며, “트라우마가 보장하는 진실이란 오직 실존적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전진성 2009, 27). 김동춘은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한 피학살자 유족과 인터뷰 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눈앞에서 부모가 총칼을 맞고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던 피학살자 유족들에게는 살아남아서 그것을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국가가 강요하는 전쟁에 대한 공식 기억과 충돌하는 개인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죽음과 같은 고통이고, 그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김동춘 2013, 78)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해가는 것을, 자기 딸이, 아들이 그 안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팽목항에서 가슴을 쥐어짜며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 했던 부모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고통을 아카이브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회학자 엄기호는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고통에는 사회적 측면과 실존적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엄기호 2018). 용산참사 이후를 다룬 영화 ‘공동정범’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진압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하는 끔찍한 참사를 겪은 ‘이충연’에게 “쓸모 있는 말은 고통의 사회적 진상을 해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접근할 때 고통의 실존적 측면은 외면받는다. 고통의 사회적 측면이 해소되더라도 실존적 측면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엄기호 2018). 즉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아카이브를 통해 이러한 진실이 널리 공개된다 해도 피해자의 실존적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회학자 엄기호는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에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의 내러티브를 만드세요.”라는 주문은 오히려 공감과 소통으로 가는 길을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 고통을 말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고통의 공유는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엄기호 2018, 114). 역설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과정을 말함으로써 서로가 고통 받고 있음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고통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이야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고통의 곁이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언어가 필요하고 또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 자리다.”(엄기호 2018, 18-19).

사회적 참사 이후 고통을 받는 사람들 곁에는 사회활동가들이 있다. 이들의 말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러한 말을 듣고 수집하며, 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의 정체성은 대체로 ‘공감하는 타자’의 자리일 것이다. 엄기호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곁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 곁에 서 있는 사람처럼 행세”할 때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사

람들이다(엄기호 2018, 290-291). 아키비스트가 고통의 곁을 지키는 사람인지 '공감하는 타자'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장을 명확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인용한 김동춘(2013)은 또 이렇게 말한다.

“사실 기억은 당사자와 더불어 남이 함께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피해자들이 그것이 자기 개인만의 특별한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인권운동가란 남의 기억을 자신의 기억인 양 복원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연구자의 작업도 그런 것이다.”(김동춘 2013, 80)

아키비스트의 작업도 이러한 연구자의 작업과 유사할 것이다. 다만 기억을 복원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다. 가급적 이들에게 유사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나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공감하고 애도하는 수많은 글들을 모으는 것 역시 기억을 복원하는 또 다른 방식의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기록전문성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전문직의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 사회적 참사 이후 이러한 전문적 활동을 통해 애도의 기억공동체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이러한 조용한 활동이 정치사회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일 것이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과연 트라우마 기억의 치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이다.

이영남(2019)은 “자살유족 기록작업의 방법과 의미”에서 정신적 참사를 겪은 이들의 치유를 위한 기록작업(쓰기와 대화)의 경험을 특유의 ‘인간학’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곽은희(2020)는 “재난의 기록, 기억을 통한 연대”에서 재난 피해자가 쓴 글을 ‘참사 기록물’이라 명명하면서 ‘재난의 고통을 겪은 당사자’가 내러티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기록활동이 트라우마 기억을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을 확인할 만한 경험이 기록계에는 없다.

이현정(2017)은 사회적 참사를 겪은 공동체와 협력하는 기록 실천에 있어서 “보살핌의 윤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보살핌의 윤리적 접근은 공감 을 기본으로 하며 “추상적 도덕 원칙보다 특수성, 연결성 맥락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이용자 중심의 정서적인 커뮤니티 기록화 접근법으로서 앞으로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이현정 2017).

프로이드는 상실한 대상에 대한 집착을 ‘우울’이라고 불렀는데, 우울은 사랑했던 대상을 상실한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상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심리현상이다. 그가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애도’다. 애도는 “타자의 상실을 지속적으로 슬퍼하는 행위”를 말한다. 프로이드는 과거를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아야 진정한 애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전진성 2009, 32-33). 애도는 트라우마 기억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식이며, 피해자 각자를 개별 인격으로 기억하는 애도의 방식은 트라우마를 겪고있는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4.16 세월호 참사의 경우 2016년 희생 학생 한명 한명의 삶에 대한 축약된 생애사, 2017년 각 학생들에 대한 시인들의 기억 육필시를 전시하는 행사가 전국 순회로 열렸다. 비극적 사건이나 참사를 기억하는 또 다른 방식은 희생자나 피해자 개개인을 개별적 인격체로 기억하고 호명하는 것이다. 사회는 참사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기억해야 하며, 이들은 기억될 권리가 있다. 개별 인격성을 존중하는 기억의 장소는 유가족들이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참사나 인권침해로 트라우마적 고통을 받는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을 위한 기록활동에는 기존의 기록전문직이 보유하는 전문성과는 사뭇 다른 역량이 필요하다. 이들의 고통이 전쟁, 국가폭력, 대형 참사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애도의 공동체는 범국가적으로, 때로는 국제적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기록전문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추모와 애도 활동에 참여하고 그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사회적 기억을 축적하는 것이다. 기록물관리기관 서비스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공공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기록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advocacy)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록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전문직 윤리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5) 기억과정 : 공동체 정체성 기반의 기록활동

기억의 기록학에서 공동체아카이브는 핵심적 주제다. 한편 기억 중심의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이다. 사회적 기억에는 거대 서사뿐 아니라 무수히 많고 다양한 공동체의 서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 정의와 관련하여 공동체 아카이브는 포용과 사회통합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사회통합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사회 구성원이 정체성을 갖도록 포용하는 것이며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질 때 실현될 수 있는 가치이다. 아카이브를 통한 구성원들의 공동체 귀속감의 강화는 사회통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공동체 아카이브에서는 구축된 결과물 자체보다 공동체가 공유된 기억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과정으로서의 아카이브’(archives-as-a process)는 스톨러(Ann Stoler)가 피식민지 아카이브를 인류학적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제안한 개념이다. 지금까지 아카이브는 기록 집합체나 보관소, 즉 일종의 사물(archives-as-things)로서 간주되어 왔으나 의미와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이경래 2015, 15).

공동체의 기억은 이야기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개인의 이야기가 모여 공동체의 서사가 되고, 공동체의 서사가 개인에게 스며드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개인 기억의 사회화와 집단기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타자가 만들어주는 아카이브는 진정한 공동체의 기억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기록은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아카이브를 통해 자신들의 기억을 확인하고 동일시하는 가운데 정체성을 공유한다(설문원·김영 2016). 따라서 기록물관리기관은 공동체를 수집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기록을 평가하고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실천과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다(설문원, 김영 2016). 이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기억기관 부문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한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기억과정에 기록전문직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 테리 쿡은 “공동체 촉진자(community facilitator)”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공동체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권을 존중하여 그들이 자신의 기록을 획득하여 관리하도록 과정을 설계, 조정하고 내러티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공익에 기여한다(이현정 2014, 241).

이러한 역할에는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깊게 활용되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이들에 대한 공감과 지지, 연대의식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체 아카이브활동에 깊이 개입할수록 기록전문가는 내부자인지 외부자인지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되고 정체성의 고민은 깊어진다(이현정 2017).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주체는 공동체 구성원이며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기억이 축적되는 과정이다. 공동체아카이브의 배경과 규모, 성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한 역량을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기억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사회적 인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공동체도 있고 마을공동체와 같이 장소의 역사성이나 유대감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다. 촉진자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다. 다만 기록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야 하는데, 다른 공동체 촉진자들과의 연대, 공공영역의 지원을 통한 물적 토대의 마련 등이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시민아키비스트를 양성하는 것도 기록전문직의 역할이 될 것이다.

4. 맺음말

최근 7~8년간 국내 기록학계에서도 기억의 담론들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아직 실천과 경험은 미약하다. 그러나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

록화, 과거사 진상 규명과 인권회복을 위한 기억투쟁, 사회적 참사와 인권 침해 희생자와 피해자를 위한 기록활동, 사회통합과 포용을 향한 공동체 아카이브는 기록학계 및 기록관리계가 꾸준히 추진해야 할 아젠다라고 볼 수 있다.

기억의 기록학의 특징은 실천이다. 또한 실천에는 사회정의라는 윤리적 방향타가 필요하다. ICA의 선언이나 기록접근원칙에도 인권신장을 위한 기록전문가의 사명이 존재한다. 기록전문직 윤리강령도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 윤리강령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기록전문직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으며, 한편으로 기록 실천주의가 표방하는 실천은 공공 영역 안과 밖에서 모두 중요하다. 공동체나 사회운동의 현장뿐 아니라 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활동도 사회정의를 지향할 때 기록실천이 된다.

다만 이러한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윤리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우리의 기록전문직은 거의 배운 바가 없다. 지난 10년간 Archival Science와 같은 학술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주제는 인권과 사회정의, 기록 실천주의, 집단기억 등이었다(홍은성 2019, 80). 사회정의와 기록실천은 더 이상 기록학의 주변 주제가 아니다. 따라서 기록학 대학원의 교과과정에도 사회정의와 기록실천, 사회적 기억활동과 윤리와 관련된 과목이 편성되어야 한다. 김지아(2018)는 정규 대학원과목으로 공동체 아카이빙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미국 UCLA 교육정보대학원 정보학과의 기록학과과정에서는 ‘가치와 공동체(Values and Communities)’가 필수과목인데 정보와 관련된 가치체계와 권력구조에 대한 토론과 비평으로 구성된다. 도서관, 기록관에서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설계, 평가, 기술의 적용 등에서 풀뿌리 기반의 로컬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탐구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문화, 사회, 전문직, 공동체, 개인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그러한 가치가 전문직 활동, 의사결정,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UCLA 2021). 또한 공동체아카이빙에 관한 다른 과목은 공동체의 정보자원 이해,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들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방법, 정

보기술을 활용한 아카이브 설계와 구현을 다룬다. 이밖에 공공기록관리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 아카이브와 협업하는 형태의 현장 실습(인턴십)도 도입하고 있다(김지아 2018, 7).

기억에 관한 긴 논의를 마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아이러니하게도 증거나 기억의 정의를 실천하려면 증거에 기반하여 다양한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아카이브를 설계 운영하는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높은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기록 전문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구현할 능력이 없다면 공허하다. 기록 증거를 축적시켜나가는 활동은 사회적 기억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가 된다. 무엇보다도 기억담론은 기록전문직의 시야를 넓히고, 사회 각 부문에서의 기록활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한다. 증거와 기억의 강력한 연대는 기억투쟁, 기억과정, 사회적 기억의 형성에 기여할 바가 크다.

〈참고문헌〉

- 강선주. 2009. 미국 교과서의 1,2차 대전과 베트남전쟁 기억 만들기. 『기억과 전쟁 :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전진성, 이재원 엮음. 서울: 휴머니스트, 59-91.
- 곽은희. 2020. 재난의 기록, 기억을 통한 연대. 『인문연구』(인문과학연구소), 92, 59-94.
- 권기숙. 2001.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35(5), 204-205.
- 김동춘. 2013.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 한국전쟁과 학살, 그 진실을 찾아서』. 서울: 사계절.
- 김명훈. 2014. 기억과 기록 :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기록학연구』, 42, 3-35.
- 김지아. 2018. 공동체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 기록학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경·김유승. 2017. 사회적 기억을 위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이해관계자 면담 연구. 『기록학연구』, 54, 249-287.
- 박찬승 엮음. 2017. 『제2차 세계대전과 집단기억』. 광주 :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
- 박현선. 2020. 재난, 아카이브, 이미지: 재난 기억의 문화적 실천. 『한국극예술연구』, 68, 231-257.

- 설문원. 2014. 환경갈등의 기록화를 위한 내러티브 설계 :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사례로. 『기록학연구』, 42, 287-326.
- 설문원. 2020. 북한의 일상생활과 '문화 아카이빙'. 『기록학연구』, 65, 321~363.
- 설문원, 김영. 2016.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평가론의 재조명. 『기록학연구』, 48, 209-251.
- 송에스터. 2020. 중대한 인권침해시의 배상 정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20(2), 79-127.
- 신동희, 김유승. 2016.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 기록과 기억의 이론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41~59.
- 엄기호. 2018.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 고통과 함께함에 대한 성찰』. 서울: 나무연필.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세계기록유산. 검색일자 : 2020.12 20. <https://heritage.unesco.or.kr/>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3~37.
- 윤은하, 김유승. 2016.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57~79.
- 윤지환, 김숙진. 2020. 기억의 선택적 재현과 다층적 기억 해석을 둘러싼 갈등 :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2(2), 116~132.
- 이경래. 2015. 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의' :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기록학연구』, 46, 5~44.
- 이경래, 이광석. 2017. 동시대 '대항기억'의 기록화 : 용산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3, 45~77.
- 이승억. 2013. 경계 밖의 수용 :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연구』, 38, 189~223.
- 이승억. 2013.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기억을 둘러싼 투쟁(서평: 김동춘 저,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기록학연구』, 38, 311-316.
- 이영남. 2008.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18, 221~254.
- 이영남. 2012. 공동체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31, 3~42.
- 이영남. 2019. 자살유족 기록작업의 방법과 의미. 『기록학연구』, 59, 207~275.
- 이영남. 2020. 흥동허스토리의 방법과 의미, 『기록학연구』, 65, 253~319.
- 이정연. 2015. 인권기록유산 가치와 지평의 확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5, 121-153.
- 이종흡. 2018. 서양 기록학계의 기억담론 : 『아카이브 병』을 전후로. 『역사와 경계』(부산경남사학회), 109, 453~487.
- 이현정. 2014.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월가점령운동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2, 213-243.

- 이현정. 2017. 참여와 개입 : 공동체 아카이빙 윤리의 모색. 한국기록학회 제117회 월례 연구발표회 발표문.
- 임지현. 2019. 『기억 전쟁 : 가해지는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가』. 서울 :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 장대환, 김익한. 2019. 기억, 기록, 아카이브 정의(正義). 『기록학연구』, 59, 277~320.
- 전진성. 2009. 트라우마의 귀환. 『기억과 전쟁 :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전진성, 이재원 엮음. 서울 : 휴머니스트, 13-55.
- 정근식. 2013.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13(2), 347~394.
- 정근식. 2014.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13(2), 347-394.
- 정은진. 2017. 치유로서 기록관리 제안. 한국기록학회 제117회 월례발표회 〈기록학과 전문직 종사자의 정체성 모색〉 발표문
- 정원옥. 2018. 다음세대에 의한 과거청산 : 의문사유가족 아카이브 작업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74, 65-88.
-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2010.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 조민지. 2011.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 담론의 새로운 방향. 『기록학연구』, 27, 89-118.
- 최정은. 2011. 사회적 기억과 구술 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 『기록학연구』, 30, 3-55.
- 한국기록학회 엮음. 2008. 『기록학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
- 홍은성. 2019. 기록학의 지식구조 분석 : 전문용어사전과 해외 학술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stian J. A. 2003. *Owning Memory: How a Caribbean Community Lost its Archives and Found its History*. Westport(CT), Libraries Unlimited.
- Bastian, J. A. 2006. Reading Colonial Records through an Archival Lens: the Provenance of Place Space and Creation. *Archival Science*, 6(3-4), 267-284.
- Bastian, J. A. 2009. Flowers for Homestead: a Case Study in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American Archivists*, 72(1), 113-132.
- Brothman, B. 2001. The Past that Archives Keep: Memory, History and the Preservation of Archival Records. *Archivaria* (51): 48-80
- Caswell, M. 2010. Khmer Rouge Archives: Accountability, Truth, and Memory in Cambodia. *Archival Science*, 10(1), 25-44.
- Cox, R. J. 1993. The Concept of Public Memory and its Impact. *Archivaria* 36:122-135
- Cox, R. J. 2005. Public Memory Meets Archival Memory: The Interpretation of Williamsburg's Secretary's Office. *American Archivists*, 68, 279-296.

- Flinn, Andrew. 2007. C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8(2), 151-176.
- Flinn, Andrew. 2011. Archival Activism: Independent and Community-led archives, Radical Public History and the Heritage Profession. *interActions: UCLA Journal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7(2). 검색일자 : 2020. 12. 1. <https://escholarship.org/uc/item/9pt2490x>
- Foote, K. 1990. To Remember and Forget: Archives, Memory, and Culture. *American Archivists*, 53(3), 378-392.
- Halbwachs, Maurice. 1992. *On Collective Memory*. Translated and edited by Lewis A. Cos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rris, Verne. 1997. Claiming Less Delivering More: a Critique of Positivist Formulations on Archives in South Africa. *Archivaria*, 44, 132-141.
- Harris, Verne. 2002. The Archival Sliver: Power, Memory, and Archives in South Africa. *Archival Science*, 2(1), 63-86.
- Hedstrom, Margaret. 2010.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More than a Metaphor, Less than an Analogy. In: Eastwood, Terry and MacNeil, Heather, eds.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Libraries Unlimited, 163-179.
- Hedstrom, Margaret. 2002. Archives, Memory, and Interfaces with the Past. *Archival Science*, 2(1-2), 21-43.
- Jacobsen, Trond; Punzalan, Ricardo L.; Hedstrom, Margaret L. 2013. Invoking "Collective Memory": Mapping the Emergence of a Concept in Archival Science. *Archival Science*, 13, 217-251.
- Jimerson, Randal. 2009.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 2016. 『기록의 힘 :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 적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Josias, A. 2011. Toward an Understanding of Archives as a Feature of Collective Memory. *Archival Science*, 11(1-2), 95-112.
- Ketelaar, Eric. 2008. Archives as Spaces of Memory. *Journal of Society of Archivists*, 29(1), 9-27.
- Ketelaar, Eric. 2014. Archives, Memories and Identities. In: Brown, Caroline, eds. *Archives and Recordkeeping : Theory into Practice*. London: Facet, 131-170.
- Millar, Laura. 2006. Touchstone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Archives. *Archivaria*, 61, 105-126.
- Nannelli, E. 2009. Memory, Records, History: The Records of the Commission for Reception, Truth, And Reconciliation in Timor-Leste. *Archival Science*, 9(1), 29-41.

- Nora, Pierre. 1989.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émoire. *Representations*, 26(Special Issue: Memory and Counter-Memory), 7-24.
- Procter, Margaret. 2017. Protecting Rights, Asserting Professional Identity. *Archives and Records*, 38(2), 296-309.
- Schwartz, Joan and Cook, Terry. 2002. Archives, Records, and Power: the Making of Modern Memory. *Archival Science*, 2(1-2), 1-19.
- Taylor, Hugh A. 1982. The Collective Memory: Archives and Libraries As Heritage. *Archivaria*, 15, 118-125.
- UCL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Department of Information Studies. 2020. Student Handbook, 2020-21. 검색일자 : 2021. 1. 20. <https://is.gseis.ucla.edu/media/StudentHandbook2020-2021.pdf>
- Valderhaug, G. 2011. Memory Justice and the Public Record. *Archival Science*, 11(1-2), 13-23
- Wallace DA. 2011. Introduction: memory ethics-or the presence of the past in the present. *Archival Science*, 11, 1-12.
- Weitekamp, Elmar G, M, et al. 2006. How to Deal with Mass Victimization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 Restorative Justice Approach. NATO Security through Science Series-E: Human and Societal Dynamics, Volume 13: Large-Scale Victimization as a Potential Source of Terrorist Activities*, 217-241.
- Wilson, Ian. 1990. Toward a Vision of Archival Services, *Archivaria*, 31, 91-92.